

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6-120호

둔촌2동모아주택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77-41번지 일대 둔촌2동모아주택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1일

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류: 가로주택정비사업

나. 명칭: 둔촌2동모아주택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: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77-41번지 일대

나. 면적: 14,095.77㎡

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

가. 착수 예정일: 미정

나. 준공 예정일: 미정
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가. 명칭: 둔촌2동모아주택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

나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: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65길 36, 2층

5. 조합설립변경인가 내용

가. 조합 정관 변경

6. 지형도면

가. 사업시행구역

